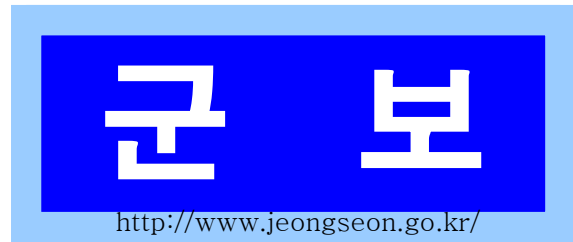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0호 2008. 5. 7 (수)

【고 시】

- 고시제2008-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 3
- 고시제2008-30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4
- 고시제2008-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5

【공 고】

- 공고제2008-223호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공고제2008-234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1
- 공고제2008-235호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공고제2008-244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29
- 공고제2008-24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30
- 공고제2008-248호 2008년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 공고 42
- 공고제2008-249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4

정선군고시 제2008-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4월 18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윤 기 숙	주 소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65-1번지
하 천 명		—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09-1번지(812-1번지선)		
	허가량	A=10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4월 08일 ~ 2010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주택 진,출입로부지		

정선군고시 제2008-30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태풍·호우·폭풍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4월 28일

정 선 군 수

관리 번호	위험 등급	유형별	지구명	위 치	지정면적	사 업 개 요		비 고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1개소		25,000㎡			
09-12 -01-0 8-07	나	상습침 수위 험	북평2지구	북평면 북평1,2리	25,000㎡	배수펌프 장설치1식	3,260	

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05월28일까지 재난안전관리과(☎560-2162, <http://www.jeongseo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고시 제2008-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4월 28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위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5-1번지
3. 사업시행자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1토지 20블럭 1로트
아주종합건설(주) 대표 차 성 근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분양아파트	○ 대 지 면 적 : 7,371m² ○ 건축 연면적 : 22,901.586m² ○ 건설호수 및 건축규모 - 건설호수 : 2동 158세대, - 건축규모 · 92.225m² (전용 69.887m²) : 54 · 107.257m² (전용 84.916m²) : 91 · 120.848m² (전용 98.6m²) : 13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기간 : 2008. 5. - 2011. 12.	총사업비: 23,151,935천원 (사업주체자금: 2,000,000천원 금융기관자금: 5,000,000천원 기타자금 : 16,151,935천원)

5. 관련법령에 의한 의제사항

- 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다.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정선군공고 제2008-223호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04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도법』 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 시행함에 있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00m이내로 규정함.
-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급수사용개시신고 및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봄.
-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용도를 제한하고 설치업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배수설비의 시행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설비는 강제이행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 대상구역은 사용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산정기준과 납기, 징수방법 등을 구체화 함.
- 하수배출량 산정시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상수도 급수량,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사용자는 지하수의 이용량으로 기타 이외의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
-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하고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산정.
-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가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종전규정을 반영.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함에 있어 처리장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정함.
-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체납시 가산금 및 납부독촉 등에 관한 사항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시설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보내실곳

－ 주 소: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2번지

－ 받는이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유상환

－ 우편번호 : 233-807

－ FAX : 033-560-2940

라. 문의사항 : ☎ 033-560-2530 유상환

붙 임 :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m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 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標識)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량산정에는 별표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 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³/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정선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등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분뇨 수집·운반 대행 업자는 법, 영, 규칙과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군수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5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 당 단가 (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거사용지역
가 정 용	476	1 ~ 10		128	
		11 ~ 20		141	
		21 ~ 30		155	
		31 ~ 40		170	
		41 ~ 50		187	
		51 이상		205	
업 무 용	1,192	1 ~ 20		162	
		21 ~ 50		178	
		51 ~ 100		196	
		101 ~ 300		215	
		301 이상		237	
영 업 용	2,489	1 ~ 30		211	
		31 ~ 50		232	
		51 ~ 100		255	
		101 이상		280	
욕탕1종	19,444	1 ~ 200		293	
		211 ~ 300		322	
		301 ~ 500		354	
		501 이상		390	
욕탕2종	60,929	1 ~ 200		434	
		201 ~ 300		477	
		301 ~ 500		525	
		501 이상		577	
기타(산업용)	㎥당			200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m³/일)

구 분	최초 행정 행위시 오 수 발 생 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 축 물 의 증 축 및 용 도 변 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 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E)>10 전체부과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bigcirc \text{ m}^3\text{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 집 · 운 반	처 리	계
1리터	12원	2원	14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리터	13원	2원	15원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지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³/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정선군공고 제2008-234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월 일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국가를 위하여 희생 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실시(안 제6조)
- 나.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권익신장,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군이 설치 관리하는 일정 시설물의 시설이용료및 진료비 감면 등 복지지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우편번호 233-804)
- F A X 제출 : 033-560-2588
- 문의전화 : 033-560-2314

붙 임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 책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감안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제재
4. 보훈관련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위문
6.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7.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8.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거리, 공원 공훈 선양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 · 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제8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 · 관리하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2. 제증명 수수료 면제. 단,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제외
3.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4.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보훈문화 창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235호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취 지

- 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 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상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집행 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초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 가. 여비의 지급구분 개정조항 적용(안 제3조)
-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안 제4조)
- 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및 개정조항 적용(안 제5조)

3. 의 견 제 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등은 2008년 5월 13일까지 정선군수(참조 : 재무과장 ☎560-2282)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정선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생 략)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 각 “군수”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정선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 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

현 행	개 정 안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로 보며,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244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04월 25일

정 선 군 수

도로 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 선 명	
점 용 목 적	생활오수관로 매설	점 용 기 간	2008. 04. 26 - 2018. 04. 25.
점 용 장 소	정선군 신동읍 예미,조동리 일원	점 용 면 적	Φ250~300, L=13,856m Φ450~600, L= 479m
점용물의종류	오수관로	공 사 기 간	2008. 04. 26 - 2009. 12. 31.
도로복구방법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관로매설
점용자 주소 및 성명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공 고 기 간	2008. 04. 26 - 2008. 05. 15.

정선군 공고 제2008-24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건설국토해양부고시 제2007-163(2007.5.10)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08년 05월 01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08. 5. 1. ~ 2008. 5. 12.(11일간)

2. 사업개요

가. 사업주체 : 아주종합건설(주) 차성근

나. 설 계 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원건축

다. 시 공 자 : 가야종합건설 홍건표

라.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615-1번지상
- 건축연면적 : 22,901.586㎡
- 규 모 : 아파트 2동 (지하1층, 지상15층)
- 세 대 수 : 158세대
- 공사기간 : 2008. 5. ~ 2010. 12. 까지
- 사업계획승인일 : 2008. 4. 28.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23,151,935 천원
- 총공사비 : 17,504,580 천원(부가가치세포함)
- 감리대상 주택건설 공사비 : 16,592,955 천원
- 타법감리: 911,625천원(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

※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공정별 총사업비구성 현황표 : 불임참조

바. 예정공정표 : 불임 참조

사. 복수예비가격

○감리비기초금액 : 471,239,000원
(감리대상공사비 :16,592,955천원
의 2.84%)

- ① 471,239,000원
- ② 469,354,000원
- ③ 467,469,000원
- ④ 465,584,000원
- ⑤ 463,699,000원
- ⑥ 461,814,000원
- ⑦ 459,929,000원
- ⑧ 458,044,000원
- ⑨ 456,159,000원
- ⑩ 454,274,000원
- ⑪ 452,389,000원
- ⑫ 450,504,000원
- ⑬ 448,619,000원
- ⑭ 446,734,000원
- ⑮ 444,849,000원
- ※ 부가세 포함

3. 감리자 등의 자격

- ① 감리자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단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② 감리원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7-163, 2007. 5. 10)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
 -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 ※ 감리자(원)의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4. 지정방법

- ① 평가기준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7-163)
- ② 적격심사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에 의함
- ③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기타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함

5. 응모서류

-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감리자(원)에 대한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감리비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밀봉 후 표지에 감리비입찰서, 응모번호, 사업주체, 감리자 명기)
- ④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 추가제출서류(평가결과에 따라 감리자 지정권자가 요청시 제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2호)에 의거 별표 제1호 서식 뒷면의 사실 확인 서류 제출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 (적격심사후 낙찰이 가능한 상위 5개사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만일 증빙서류를 통보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리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함)
- 제출서류중 감리자의 행정제재에 대한 제출서류, 감리원 경력증명서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업체간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7. 재무상태평가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 및 자기 자본비율

- ① 평균 유동비율 : 253.69%
- ② 평균 자기자본비율 : 60.17%

8. 응모서류 접수기간

① 일 시 : 2008. 5. 14(수) 14:00부터 16:00까지 접수

② 장 소 : 정선군 건설도시과(주택부서)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상기근무 시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등의 추첨(입찰서 개봉 포함)일시 및 장소

연 번	사 업 주 체 (세대수)	예정가격 추첨⇒가격 입찰서 개찰		
		년 · 월 · 일	시 간	장 소
1	아주종합건설(주) (158세대)	2008.5.14. (수)	16:30부터	정선군청 2층 회의실

① 예정가격의 추첨시에는 감리자지정 신청을 한 감리자(또는 위임을 받은자)가 참석하여 예정가격을 추첨한 4개의 평균 가격으로 하며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함.

②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추첨일에는 추첨 10분전까지 감리자 지정신청자(대표) 또는 위임장 제출한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됨.

10. 열람 및 이의신청

① 기 간 : 2008. 5. 15. ~ 2008. 5. 17.(3일간)

② 방 법 :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감리자지정 신청자가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열람 및 이의 신청 할수 있는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 자기 평가표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 신청 불가

11.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 - 163(2007. 5. 10)호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응모서류 등록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기술능력 평가심사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의 미비로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신청된 서류는 개찰일로부터 10일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

- 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 마. 감리입찰서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하되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바.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사. 감리원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공고당일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아.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감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벌점을 부과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 감리자 상훈 및 경력이 지하철공사, 공항, 부두공사 등 주요공사가 건축물과 관련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카.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된 경우에는 해당항목 0점 처리 합니다.
- 타.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파.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제출후 수정 및 보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건설감리자지정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과 기타 업무지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거.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는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너. 지역가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 기타 의문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주택부서(☎033-560-2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사업명 : 정선파크빌아파트)

2008. 5.

(감리회사명)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광남건설(주)외1인	대표자	김덕수외1인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72번지외2필지		대지면적	2,776㎡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14층, 1동, 59세대		7,650.04㎡	2007.05.
설 계 자	성 명	김 종 화	상 호	(주)도우건축사사무소	
	주 소	서울시 강동구 길동 389-9 광남캐스빌 204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괄						
보조						
보조						
보조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보존용지 2종 70g/㎡)

(뒷 면)

구비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주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 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 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무 중첩도	다른 공사현장과 의 업무중복도(보조감리원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회사)	재정상태 건 실 도	유동비율	4			예) 00(%)	
		자본비율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0.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외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 리 원	총괄감리원	등급	6			예) 00(년)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00기술사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1			
	분야별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기타설비	2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기타설비	6			
		가점	자격가점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행정 제재	건축	(-1)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연령제한	건축	(-0.5)			예) 만00(세)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정선파크빌아파트 신축공사			
	금 액	금	원정(₩)		
입 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 (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을 규정
 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
 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
 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 지 면 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공사		사업승인일	20 년 월 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20 년 월 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3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3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사유로 인하여 현재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지**되고 있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치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인)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치정권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사 업 명 : 정선파크빌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주체 : 아주종합건설(주)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당해공사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추가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감리자 교체·벌점부여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공고 제2008-248호

공 고

솔잎혹파리 피해임지 피해도 “중” 이상의 산림에 대하여 2008년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을 실행하고자 사업추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후 우리군에서 방제사업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08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
2. 사업기간 : 2008. 5. ~ 6. 30
3. 사업내용 : 솔잎혹파리 나무주사(포스팜 액제)
4. 공고기간 : 2008. 4. 30 ~ 2008. 5. 19(20일간)
5.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자에게 대행하여 실행함.
 - 본 공고에 이의가있을 경우 공고기간내에 우리군 환경산림과 전화(033-560-2167)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바랍니다.
6. 사업대상지 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2008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 대상지 1부(총괄).

2008년 4월 30일

정 선 군 수

2008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대상지 필지별 내역(총괄)

읍면별	리	필지수	방 제 면 적(ha)		비 고
			지 적	실 행	
정선	덕우	31필지	71.63	55.30	
	신월	32필지	79.33	51.87	
	여탄	25필지	57.84	33.56	
	소계	88필지	208.79	140.73	
신동	가사	35필지	210.99	74.29	
	고성	62필지	230.63	141.02	
	덕천	39필지	156.30	108.09	
	예미	63필지	461.95	223.66	
	운치	12필지	67.32	35.63	
	조동	5필지	32.61	16.16	
	천포	20필지	147.59	108.98	
	소계	236필지	1,307.38	707.83	
동면	물운	30필지	78.67	59.70	
	석곡	70필지	214.57	159.60	
	화암	25필지	83.27	33.96	
	소계	125필지	376.51	253.26	
남면	낙동	27필지	62.29	38.20	
	무릉	41필지	89.52	63.40	
	문곡	25필지	68.39	44.90	
	유평	15필지	37.32	27.10	
	소계	108필지	257.52	173.60	
북면	남곡	38필지	178.64	77.60	
	봉정	72필지	170.30	123.00	
	여량	24필지	54.00	38.30	
	유천	52필지	142.09	100.40	
	소계	186필지	545.03	339.30	
북평	나전	20필지	99.96	86.60	
	북평	73필지	152.95	123.57	
	소계	93필지	252.91	210.17	
임계	골지	66필지	160.19	126.30	
	낙천	32필지	60.28	57.20	
	송계	58필지	198.75	154.00	
	용산	29필지	59.54	47.60	
	소계	185필지	478.76	385.10	
합계		1021필지	3,426.91	2,210.00	

정선군공고 제 2008-249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30일

정 선 군 수

1. 200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가격기준일 : 2008. 1. 1.

나. 결정공시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5번지 외 9,964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가격(토지, 건물 일체)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08. 4. 30 ~ 5. 30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마. 이의신청처리: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